2022-06호

06

의정정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6호

06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3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4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13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19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
24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3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31년 만에 변경
33 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35 강원도의회, 청사 증축 완료
3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최근 제 · 개정 법령

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4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4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석면안전관리법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55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관련 질의

59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64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6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7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7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관련 질의

06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시행 2022. 5. 6.] [경상남도조례 제5226호, 2022. 5.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마약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후 연령 제한,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개를 말한다.
2. “입양자”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자의 책무)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양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
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례 보조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액,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 2022. 5. 2.] [대구광역시조례 제5769호, 2022. 5. 2., 제정]

01 조례는 노사상생 협력모델의 거점 및 교육연구시설로 건립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2길 6에 둔다.

제3조(주요사업)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산업역사관, 체험관 등 상설 전시관 관리 및 운영
3. 노동·산업문화 우수작품 등 기획 전시 및 유치
4. 노동·산업역사 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
5. 노사단체, 기업, 학교 등에 교육 및 회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올바른 노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전당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전당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구입, 기증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당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산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사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등

제9조(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여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당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교육훈련실, 세미나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빔프로젝터 등

제11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 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조직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사상생 관련 행사: 100분의 50 경감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관람

제17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노동·산업역사관, 체험관 및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해설사 운용) ① 시장은 노동·산업역사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

제20조(프로그램 추진) ① 시장은 노사상생과 노동·산업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그

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프로그램의 내용) 노사상생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상생 연구에 관한 사업
2. 노사상생 체험에 관한 사업
3. 노사상생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사상생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노동 관련 기관 교류사업 등

제6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

제22조(소장품 구입) 시장은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4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소장품의 열람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품은 작품·도록(圖錄)·CD·필름 등을 포함한다.

제26조(소장품 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사료 등의 기증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품의 평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27조(소장품의 불용결정) ① 시장은 소장품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사용·수익 허가) 시장은 전당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전

당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조정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사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장품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6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
-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 1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99호, 2022. 5.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296-1, 297-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 스튜디오
2. 자연광 스튜디오
3. 사무실 및 회의실
4. 편집실
5. 분장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3.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등(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시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주된 사용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스튜디오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스튜디오의 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스튜디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튜디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시행 202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86호, 2022. 5. 13., 제정]

이 조례는 연천군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를 보호하고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참여와 자발적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조"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두루미를 말한다.
2. "도래지"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해 지정된 두루미 보호구역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두루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보호활동"이란 두루미와 도래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감시, 계도, 교육 홍보 및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도래지 보호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주민"은 도래지가 속해있는 읍·면의 거주 주민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이행을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활동 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호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두루미의 생태 및 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2.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 및 교육·홍보 등 실천 사업
3. 보호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시행계획수립)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1. 도래지 보호 및 개체 수 증식에 관한 사항
2. 두루미의 먹이 생산 보존에 관한 사항
3. 두루미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사항
5. 보호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할) 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및 협조와 지원
2.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및 정화
3. 기타 두루미와 도래지 생태를 저해할 수 있는 활동 감시 등

②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식지 조성 및 관리
2. 개체 수 및 서식지 등의 모니터링 방법
3. 두루미와 도래지의 감시 및 방문객 안내 해설 방법
4. 먹이 주기 활동 방안
5.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산출내역

③ 마을공동체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교육 이수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마을공동체는 연천군 내의 봉사단체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봉사단체의 협조) ① 연천군

내 봉사단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활동 중 필요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및 관리와 활용사업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및 선정·심의하기 위해 연천군천연기념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천연기념물 등 연천에서 보호 및 관리할 동.식물의 선정
2.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선정 및 보호활동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심사
3.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방안
4. 천연기념물의 기록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의 탐조 관광 등의 사업 방향 및 사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사업추진 결과의 평가
7. 그 밖에 천연기념물과 두루미 도래지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3. 환경, 생태계, 관광, 문화재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4. 두루미의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보호활동 구역의 이해당사자
6. 그 밖에 생태계보호 및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보직 변경이 있는 자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2. 5. 3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22호, 2022. 5.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강진군 청소년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의 청년과 중복되지 않는 나이의 범위에서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체계적·종합적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활동을 권장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2. 군정·사회참여 및 권리증진
3. 자립 및 보호
4. 관련 활동의 안전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③ 지도위원, 군 소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수 및 그 보호자와 함께 청소년 보호·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시책사항을 해당 임무·업무 사업 등의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위원회) ①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강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

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라. 강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건강사정,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다. 그 밖에 군수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 밖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message), 이-메일(E-mail)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안건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한 경우 강진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효율적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3. 청소년단체의 운영·활동 권장
4. 복지향상 및 청소년활동 장려
5. 청소년 보호
6.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② 군수는 육성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제외한다.

④ 육성사업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camping)이나 수련 활동
2. 국제협력·지역교류, 해외봉사 또는 해외구호 활동
3. 국토·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4.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활동
5. 문화·예술 및 재능 경연대회 등의 기획 및 공연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군수는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업무에서 제외하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시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 특별체험 공간 등 시설의 확보
2.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개방 및 활용
3.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

② 군수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확보 및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당사자와 해당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8조(지도위원 및 협의회) ① 군수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원활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위촉하는 강진군 청소년지도위원(이 조례에서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전한 생활의 지도
2.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및 홍보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상담 및 자문
4. 군 지역사회 내의 유익환경 조성 캠페인(campaign) 전개
5. 우범, 비행 등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6. 취약계층 가정의 실태파악 및 군수에게 보고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 소재 청소년단체·사회복지단체의 대표,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도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지도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지도위원은 스스로 그 효율적 임무수행 · 상호협력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종합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읍 · 면 단위로 강진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며, 해당 규약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이를 표시하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지급,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는 청소년의 보호 · 육성에 이바지한 시설, 기관 · 단체 등을 포함한다.

제9조(지도 · 감독 등) ① 군수는 육성사업의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 단체 등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 · 보조한 업무수행과 해당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 ·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단체
3. 협의회
4. 그 밖에 육성사업 업무 또는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점검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청소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지도위원, 관련전문가 등에게 수당 · 여비 등 지급
2.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육성사업 업무 및 청소년시설의 위탁
3. 「강진군 포상 조례」: 제9조제6항의 표창
4.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호에 따른 위탁경비의 회계처리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시행 2022. 5. 2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98호, 2022. 5. 20., 제정]

이 조례는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2.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3.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노동자 실태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
9. 특수고용직 ·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사업

10. 노동안전 ·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1. 노동권익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12. 그 밖에 시장이 원주시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 노동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받기 위하여 원주시 노정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노동존중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존중 및 노정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 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정협치위원회에 노정협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노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익 및 복지, 인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

06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31년 만에 변경
- 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개최
- 강원도의회, 청사 증축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31년 만에 변경

무기명 교황 선출방식(콘클라베)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부터 적용 예정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한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을 6월 16일(목)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다음 제9대 의회부터는 바뀐 방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간의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었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다수당 독점, 정책 경쟁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후보등록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에 더해, 시의회 내에서도 최근 전체 의원 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후보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

회 안건으로 발의했고, 이를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후보등록제 도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이틀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단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등록한 후보자들 중 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선거 하루 전 18시까지 등록을 해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장 선거와 달리 정견 발표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한편,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의장 선출방식의 변경은 1991년의 개원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다. 개정된 선출방식은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제9대 의회 최초 집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가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서 후보등록제로 의장을 선출하는 광역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아홉 군데가 되었다.

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식 도입으로 주민들이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상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 안내 등 다채롭게 구성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6월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축하공연은 ‘의원과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밴드인 ‘HAMI 밴드’가 준비한 음악 공연으로 꾸려졌다. ‘나는 나비’, ‘Whisky on the Rock’, 그대에게 등 당선의원들이 도민들의 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그 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및 영상이 송출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제11대 의회가 계속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와 당선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의정활동 지원사항 안내에서는 영상 그래픽을 활용한 청사시설 소개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정역량 제고에 내실화를 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의원 당선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청사 증축 완료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 준비 총력

강원도의회사무처(처장 최정집)는 지난 2월에 착공, 5개월여에 걸친 강원도의회 청사 증축공사를 오는 24일(금) 최종 마무리 짓는다.

총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에 위치한 강원도의회 청사 신관동을 4층에서 5층(증, 연면적 622㎡)으로 1개 층 더 증축한 것으로, 제11대 강원도 의회에서 개편, 확대(6개 → 7개)된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간 등과 도의원 정책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 채용된 정책지원관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청사 증축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올 2월에 착공, 마침내 준공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회사무처는 증원(46명→49명)된 도의원 정수에 맞춰 본회의장 의석, 의원연구실 추가구성 계획도 모두 마쳤다고 하였다.

최정집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은 ‘근무 환경이 직무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강원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제주도의회

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 청구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청구인 대표자 : 김석종((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
- 청구인 : 4,119명(청구인명부 서명자 총 6,799명 중 유효 서명 주민 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연서 주민수 1,025명이상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농민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업인 1인 40만원 지급 : 2,628백만원(6,571명×400,000원)
- 어업인수당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한편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후 최초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로써 좌남수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6월 21일)에서 상정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도→도의회) : 2022.1.13

06

최근 제 · 개정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석면안전관리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제정]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1년 7월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퍼센트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퍼센트, 카드 사용액은 72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 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이 주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시행 및 상호 공동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제13조).

사.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ㆍ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32조).

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정]

1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 · 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

1 제정이유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제1조 및 제6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

1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 및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주차장)로 건설될 예정임.

그 중 통합운영지원센터 시설은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할 예정이나,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함(제3조).

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단지 공동·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7조).

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제13조).

바.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공개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 · 변형신고,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그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 · 변형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제11조).

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제21조제1항).

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본문 등).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관련 질의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질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관련 질의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28조제4항 관련

질의요지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109, 2022. 6. 14., 경상남도 김해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하여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민에게 김해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김해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요지

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만 연료비를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22-0113, 2022. 6. 9., 충청북도 제천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제천시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각주: 제7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함께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에 따라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

한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이하 “연료비지원”이라 한다)하는 사무가 제천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연료비지원 사무가 제천시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연료비지원이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료비지원 사무는 제천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료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연료비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각주: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료비지원에 관한 규정은 현행 법령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거나(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연료비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제천시의 재정 상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제천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등을 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천시에서는 제천시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청한 가구에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따라서 제천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연료비지원의 대상을 제천시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한정하더라도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질의요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의견22-0095, 2022. 6. 9., 경상북도 포항시]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포항시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자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의 시 · 군 · 자치구 사무란 2)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을 시 · 군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 규정을 고려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나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포항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의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자치사무 예시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기관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개정 추진 중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민이 아니라 행정구역인 "읍 · 면 · 행정동"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귀 기관의 입법의도와 같이 주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경우 해당 규정을 수정하여 지원 대상이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148, 2022. 5.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는 사업내용(같은 법 제65조제4항)을 보면 시장 등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상인회 등록, 정관 인가, 등록 취소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제3항 및 제8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65조제7항), **상인회에 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65조제4항에서** 상인회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제1호),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제2호),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제3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제4호) 등 제7호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그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인회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질의요지

가.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공설시장 사용허가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44, 2022. 5. 31., 경상남도 창원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이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창원시조례안"이라 한다)에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각주: 법제처 2021. 11. 12. 의견제시 21-0308), **사용허가 신청의 제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장의 구역(제1호),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제2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3호),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제4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 사용허가 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설시장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및 입주 농어민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1세대 1점포에 한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전통시장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설시장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경우 1세대 1점포에 한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든 공설시**

장에 대하여 그 사용허가의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창원시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창원시장은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각 호(각주: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공설시장 사용허가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창원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으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97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제9호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각주: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공설시장 사용허가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 등 관련

질의요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의견22-0093, 2022. 5. 3., 인천광역시 중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이하 "인천광역시 중구조례"라 한다)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공무원의 범위를 부구청장(제1호),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제2호),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제3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일정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한 것은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등에서 출석·발언하는 공무원의 답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에서 규정한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의 제36조제4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출석·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조에서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 이는 실무적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팀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조례 제36조의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규정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긴 하나, **의회나 위원회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에 따라 실·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팀장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설명

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한 70년, 더 큰 도약 꿈꾼다”

-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 의정활동 경과보고 및 사진전 등 개최 -

- 예산심사 및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역할 대폭 증대 -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걸어온 70주년을 돌아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8일 오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축하공연과 의정활동 경과보고, 김명선 의장의 기념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및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70주년 퍼포먼스, 사진전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신재원 의정회 회장,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꿋꿋하게 역할을 해냈고, 대의기구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70년 역사를 계승해 100년, 나아가 200년을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952년 5월 20일 초대의회가 출범, 제1대 46명, 제2대 45명, 제3대 48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된 뒤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6월 20일 제4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의회 부활을 알렸다.

22. 5. 26. 보도자료

MEMO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6호

• 발 행 일 | 2022년 6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